

의안번호	2215698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30.
추 계 번호	25A7373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제73조의4 신설 (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)	○ 국유재산 가운데 연체료등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음 -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- 연체료등을 체납한 자의 재산 조사 - 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제73조의4 신설(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과 같이 국유재산의 연체료등¹⁾을 징수하지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을 위한 위탁방법,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위, 위탁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

1) 개정안에 따른 “연체료등”이란 중앙관서 장등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,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, 대부료, 변상금 및 동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말함
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사유에 해당

- 참고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위탁관리 범위는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일반재산이며,²⁾ 위탁받은 국유 일반재산은 다음에 나타낸 표와 같이 토지 747,009필지·건물 1,765동·공작물/입목주 769개임

[표]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국유재산 현황: 2025년 12월말 기준

(단위 : 필지(동·개), 천㎡, 억원)

구분	토지	건물	공작물/입목주	합계
필지/동/개	747,009	1,765	769	749,543
면적	496,055	655	280	496,990
대장가격	312,932	2,580	176	315,688

자료: 한국자산관리공사 답변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2) 「국유재산법」 제4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